##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0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조계원·주철현·박민규

민형배 • 이용우 • 민병덕

서미화 · 박희승 · 김우영

염태영 · 이광희 · 양문석

송재봉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기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 · 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 · 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

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신문·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편집·제작운영계획서의 내용)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편집·제작운영계획서(이하 "편집·제작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제4조에 따른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제6조에 따른 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집·제작운영계획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	제9조(등록) ①
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	
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	
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2.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에 관
	한 사항(신문・인터넷신문에
	<u>한정한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사업의 승계) ①·② (생 저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u>대통</u>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조	의 :	3(편	집	• 저	] 작	운 여	경계	획	서
9	의	내	용)	제	9조	:제]	[항	제12	2호	에
<u>r</u>	다른	<u> </u>	편집	• 7	세즈	문	영계	획	서(	0]
<u> </u>	하	" -	편집	• 7	세직	-운	영겨	]획	서"	라
<u> </u>	한디	})여	]는	제	4조	에	따	른	편	<u>집</u>
9	의	독립	발성	보	장	및	제(	<u></u> 조	케	따
<u> </u>	른	독?	자의	건	린리	Ŀ	보호	에	관	<u>한</u>
<i>)</i>	아 <sub>현</sub>	}을	王	함히	-여	o}:	한디	<u>}.</u>		

제14조(사업의	승계)	1 • 2	(현
행과 같음)			

3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
집·제작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